

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8-12 |
|----------|------|

제출년월일 : 2018.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제안이유

- 그간 상설위원회로 운영해왔던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저조한 운영 실적을 감안, 안전 심의 후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보다 탄력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상설위원회로 관리되고 있는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안 제9조제1항)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지방자치법 제3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5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 : 2018.5.21. ~ 6.11.(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타 시군 현황 등 : 붙임 4
- 현행 조례 : 붙임 5
- 방침결재문 : 붙임 6

< 붙임 1 >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재직 중 사망한 시의원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구자”를 “청구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 의원”을 “해당 시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자”를 “청구권자”로,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구자가”를 “청구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청구자와”를 “청구인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시의원 보상금 업무 담당 실·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회의 심의 종료 시에는 자동 해산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서 | | 정책기획과 |
|------|--------------|-----------------------|
| 입안자 | 과장 성명 |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
| | 팀장 성명 | 의회협력팀장 이경희 |
| | 담당자 성명·전화 | 정세진 (031-481-2048)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재직 중 사망한 시의원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
|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p>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안산시장</p> | <p>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 청구권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 ----- 해당 시의원 ----- <p>② ----- ----- ----- ----- ----- 청구권자 ----- ----- 의장 -----</p> |

| 현행 | 개정안 |
|---|---|
| <p>(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p> | <p>-----</p> |
| <p>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u>청구자가</u>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p> <p>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u>청구자와 의장에게</u> 그 내용을 통보한다.</p> | <p>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 ----- <u>청구권자가</u> ----- -----</p> <p>② ----- <u>청구인과</u> ----- -----</p> |
| <p>제9조(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p> <p>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u>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u></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의원중 1인 2. 시 본청 관련 실·국장 1인 3. 의무직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p>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의장의 추천을</u> 받아야 한다.</p> | <p>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①</p> <p><u>시장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비상설위원회로 한다.</u></p> <p>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시의원 보상금 업무 담당 실국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p>③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안전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회의 심의 종료 시에는 자동 해산된다.</p> |
| <p>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회의원의 사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 <p>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p> |